



2005년도 양돈산업 정책방향



석희진 과장
농림부 축산물위생과

1. 수급안정대책 추진

- 민간자율적인 수급조절사업 실시
 - 생산자조직 중심의 「수급안정위원회」에서 자율수급조절 사업자금(Seed Money 250 억원)을 이용한 자율적 수급안정 유도
 - 사업비 : ('02) 15 → ('03) 23 → ('04) 3 → ('05가용액) 36억 원
 - ※'04부터 의무자조금제 시행으로 사업축소
 - 돈가폭락, 가축질병 발생 등 특수수요 발생 시 축발기금 추가지원
- 가축계열화사업 등 지원
 - 가축계열화사업
 - 전문경영체 중심의 생산·가공·유통 일관경영으로 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하여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 도모
 - 생산·가공·유통시설(3년거치 7년상환) 및 사육비(2년내 상환) 지원
 - '05지원계획 : 7개소, 203억원 용자(금리 4~5.5%)
 - 경영안정자금 지원
 -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경영비 일부지원
 - 10백만원이내 용자(1년, 년리 3%)

- 재해, 가축질병, 가격폭락 등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경우 경영회생자금 지원
 - 3년거치 7년상환, 년리 3%
- 육가공업체 운영자금 지원
 - 고품질 위생적인 국내산 축산물 또는 가공 품을 생산하는 업체의 원료 구매 소요액
 - '05 지원계획 : 376억원 용자지원(1년거치 일시상환, 년리 4%)

2. 의무자조금 조기 정착

- 「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의 제정·공포('02. 5. 13)로 의무자조금제의 법적 근거 마련
 - 축산단체가 의무 자조활동자금을 조성할 경우 정부는 조성액의 100% 범위 이내에서 보조 지원
 - '92년부터 임의자조금을 추진하였으나 강제성이 없어 참여 미흡
- 양돈협회와 농협중앙회 공동으로 의무자조금제 도입('04.4)
 - 거출금 400원/두, '04. 12 현재 자조금 납입율 90% 수준으로 정착단계
 - 월별 납입율 추이 : ('04. 4월) 65%→(7



월) 89, (10월) 89→(12월) 86

- 축산 자조금 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
 - 년도별 자조금사업 규모 : ('03) 2.8억원 →('04) 51억원→('05계획) 110억원
 - 정부 보조금 지원액 : ('03) 1.4억원→ ('04) 25억원→('05계획) 45억원
 - 자조금 사업에 대한 평가 및 홍보 등으로 자조금 조성 분위기 확산
 - 축산단체의 자조금 조성 노력을 최대한 지원
- 축산 자조금 제도개선 방안 마련
 - 대의원의 수를 축종의 특성 및 해당 축산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정
 - 수납기관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거출업무 원활화
 - 한 품목에 2개 이상의 단체가 있는 경우 공동자조금활동관리국을 두어 자조활동자금을 운영
⇒「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 개정 추진(상반기)

3. 우수브랜드 육성

(1) 현황 및 문제점

- 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 브랜드 수가 빠르게 증가
 - 브랜드업체수 : ('99) 194개→('01) 525개→ ('03) 700
- 소규모·부실 브랜드 난립으로 소비자 혼란을 초래
 - 품질차별성은 미약한 반면 가격만 비싸다는 소비자 단체의 불만
- 우수 브랜드 개념 및 모델 미정립으로 체계적인 브랜드 관리 미흡

(2) 세부추진계획

- 우수 브랜드경영체 중심으로 축산농가를 결집시켜 농가의 안정적 판로 확보 및 소득보장
 - 브랜드사육 비중을 '03년 41%에서 '13년까지 70%로 확대('05년 47%)
- 브랜드 경영체의 사업계획을 평가, 우수업체에 대해 생산·유통 자금 등 집중 지원 : 932억원(연리 3%, 3년 거치 일시상환)
- 소비자단체 주관으로 우수 브랜드 10개업체 선정·발표('05. 1월)
- 도드람포크(도드람), 동설맥포크(진왕영농), 문경약돌(주), 소백산쑥돈(소백산영농), 의성마늘포크(의성축협), 포크밸리(부경양돈), 프로포크(목우촌), 크린포크(선진), 하이포크(대상), 한라산도야지(탐라유통)
- 브랜드 컨설팅 지원 등 체계적인 브랜드 관리 지도 강화
 - 브랜드경영 지침서 발간 및 자가진단 프로그램 개발 보급
- 브랜드경영체와 LPC의 효율적 연계방안 강구
 - 경영 정상화 또는 계열화를 추진하는 우수 LPC업체 우선 지원
- 브랜드 경진대회 및 전시회 개최('05. 10월)

4. 위생·안전성 강화

(1) 현황 및 문제점

- 과거에 비해 위생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으나 선진국에 비해 미흡
 - 사육단계에서 항생제 등 과다 사용, 휴약 기간 미준수 등 사례
 - 도축장 시설은 현대화되었으나 검사 인력



은 크게 부족

- '03. 7. 1부터 소 돼지·닭 도축장(162개소)에 HACCP 의무 적용
- 가공장은 HACCP자율적용('04말 현재 175개소 지정)
- 도축장당 검사원 115명(포유류 도축장 110개소, 검사관 127명)
- 유통 종사자의 위생의식이 미흡하여 재오염 사례가 다수 발생
- 사육에서 최종 소비단계까지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「축산물 위생·안전성제고 종합대책」을 수립·추진중('04. 7)

(2) 세부추진계획

- ◆ 「축산물위생·안전성제고 종합대책」의 착실한 추진으로 선진국 수준의 축산물 안전성 확보
- 상대적으로 위생수준이 미흡한 사육단계, 도축 이후 유통단계의 안전성 제고 중점 추진

- 사육단계 : 농가 교육 및 사료·동물약품 관리 강화
- 동물약품 오·남용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용 비디오 제작 배포
 - 항생제 휴약기간 준수요령, 안전사용규칙, 관련 법령 및 국제동향·기준 등
- 항생제 등 잔류 허용기준 초과농가에 대한 제재 강화
 - 위반농가 명단 공개, 규제검사 기간 연장, 과태료 인상 조정 등
- 동물약품 안전 사용농가에 대한 우대조치
 - 우수브랜드 인증 및 정책자금 지원시 잔류위반 비율을 반영

• 사료공장 HACCP 적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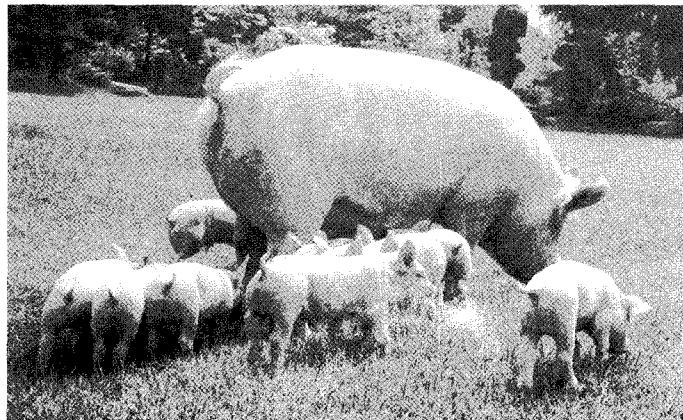
- 사료내 중금속, 살모넬라균, 항생제 등 위해요소를 중점 관리
- 업체 자율로 시행하되 사료원료자금 우선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
- 사육단계의 HACCP 지침 제정 및 적용모델 개발('05. 12)

■ 도축·가공단계 : 미생물 등 검사 강화 및 HACCP 적용 확대

- 식육에 대한 잔류물질 및 미생물 검사강화('04, 202천건→'05, 240천건)
- 도축장 HACCP 운용실태 점검 강화
 - 점검대상을 HACCP 미 실시 도축장에서 기 실시 도축장까지 확대
- 가공장 HACCP 적용 축산물 차별화 및 홍보 강화
 - 군납, 집단급식 등에 HACCP제품 우선 사용 협조 요청(연 4회)
 - HACCP 실시 가공장에 원료육 구매자금 등 우선 지원('05 : 376억원)
 - 정부 미지정 축산물가공장 HACCP 명칭 사용금지 계도 단속 강화

■ 유통단계 : HACCP 도입 및 위생감시 강화

- 보관 운반 판매업소 HACCP적용을 위한 지침 제정 및 보급
- 위생점검 체계의 정비 및 쳐별 강화
 - 재래시장 등 축산물 위생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 강화
 - 중요 축산물관련 범죄에 대해 형량 하한제 도입 추진(법 개정)
- 식육판매업소 신규 개설은 식육처리기능 사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가능하도록 개선('07년 시행)
- 수입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
 - 축산물 수입판매업 영업신고 접수 기관을



현행 시·도(시·군·구)에서
겸역원으로 전환 추진(법 개정)

-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소비자 및 생산자 감시활동 확대
 - 축산물 명예감시원 확대 및 수당 인상(3만원/1일→5만원)

5.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

(1) 현황

- 축산분뇨 발생량은 사육규모 확대에 따라 증가 추세

- 연간 가축분뇨 발생량('04년 기준)은 49,792천톤(1일 136천톤)

* 축종별 구성비 : 한우 17.8%, 젖소 16.6, 돼지 56.2, 닭 9.4

- 가축분뇨를 포함한 전체 비료 공급량이 토양(농경지)의 양분(질소, 인산 등) 수요를 초과하고 있는 실정

- 전국 평균 비료 공급량은 수요 대비 질소 113%, 인산 125%

※ 축산분뇨 처리 실태 : 퇴·액비화(88.6%), 정화처리(3.0), 공공처리(4.5), 해양배출(3.9)

- 일부 지역에서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는 민원 발생의 원인

※ 대기환경 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악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악취 방지법을 별도로 제정, '05. 2. 10부터 시행

- 「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(汚糞法)」에 의한 신고규모 이상 축산농가에게 '91년부터 가축분뇨처리 시설비 지원

※ 신고규모(축사면적 기준) : 한우우 50~900㎡, 젖소 100~900㎡, 돼지 50~1,000㎡, 닭·오리·양 150㎡ 이상

▲ 농림부는 2005년에 수급안정대책 추진, 의무자조금 조기정착, 우수브랜드 육성, 위생·안전성 강화, 가축분뇨 자원화, 친환경 직불제 조기정착, 축산업등록제 추진, 가축방역대책 추진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.

- 가축분뇨처리 시설 지원 등으로 대상 농가중 97.6% 설치

- 지원액 : ('91~'03) 9,644억원→('04) 390억원→('05) 333억원

※ 신고규모 이하의 농가는 시·군 운영 공공처리장에서 정화처리(환경부)

- 축산분뇨 퇴·액비의 농지 환원 촉진을 위해 유기질 비료(축분퇴비) 가격보조 사업, 액비 살포비 등 지원

• '04년부터는 가축분뇨의 조사료포 환원, 가축사육두수 감축 유도를 위한 친환경 축산직불제 사업을 시범 추진 중

(2)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 대책('04. 11, 환경부와 공동 수립)

- 지역환경 용량을 감안한 적정 가축 사육 유도

• '07년부터 양분총량제 도입으로 가축분뇨 퇴·액비를 비료원으로 대체('05~'06년에 기준설정 등 사전준비)

• 밀집지역 축사 이전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('05년 : 6개소)

• 적정한 분뇨처리시설 설치 유도(사육면적

정 책

기준→면적과 두수 기준)

- 가축분뇨 퇴·액비의 수요확대를 통한 자원화 촉진
 - 화학비료 보조 중단('05. 7) 및 유기질비료 가격보조 확대
 - 가격보조 : ('99~'03) 220만톤/800억원→('04) 60만톤/210억원→('05) 70만톤/245억원
 - 퇴·액비 부숙도 기준 마련으로 품질 및 안정성 제고
 - 경종농가 액비저장조 설치(보조 80%) 및 액비 살포비 지원(20원/평)
 - 대규모 조사료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퇴·액비 대량 수요처 확보
- 효율적인 가축분뇨 처리지원을 위한 교육·홍보 강화
 - 자원화시설 지원 및 처리가 용이하게 전(前)시설 우선 지원(333억원)
 - 자원화시설 보조율 확대 : '04년 보조 30%, 융자 70→'05년 보조 50%, 융자 50
 - 경종농가에게 퇴·액비 이용 방법, 효과 등 홍보 및 전문 인력풀을 구성하여 농가, 지도요원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(2억원/년)
 - 처리기술, 환경개선제 등 관련 자재를 평가하여 우수자재 정보제공
 - 농과계 교육기관에 자원순환 시스템 설치 지원 및 교육센타로 운영
- 공공처리 기능 확대로 축산농가 부담 경감
 - 자원화 시설 중심의 공공처리시설 설치 확대(환경부, 41개소 100개)
 - 지역단위 통합관리센타 시범사업(환경부, 1개소) 추진 및 보급확대 유도
 - 바이오가스 등 가축분뇨의 대체에너지 생산 유도를 위한 기술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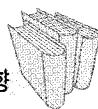
6. 친환경직불제 조기정착

(1) 현황 및 문제점

- 가축질병 발생, 가축분뇨 문제 등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커짐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진국형 축산으로 전환할 필요
 - '04년 친환경 축산직불제 시범 도입
 - 친환경축산프로그램(적정 사육밀도 유지 등) 이행에 따른 추가비용 또는 소득 감소분의 50% 지원
 - 축종별 기본 프로그램 : 1,300만원/호 한도내 지급
 - 인센티브 프로그램 : 200만원/호 한도 내 추가 지급
 - 언론광고, 리후렛 배포(35천부), 전국 순회 교육 등 다각적 홍보 실시
- 양돈농가들이 경제적 손실을 수반하는 친환경 축산에 소극적 자세
 - 산지가격이 강세를 보여 사육두수 감축 기피
 - 친환경 축산의 잇점에 대한 농가의 인식 부족

(2) 세부 추진계획

- '05년 사업시행 목표 : 9백호(58억원)
 - 연중 수시로 축산업등록을 마친 희망농가 대상 신청·접수
 - 지원조건 : 두당 25천원
 - 사육밀도를 등록제보다 20~30% 완화 하여 분뇨발생량 감축
 - 발생된 분뇨는 비료업체에 퇴액비로 공급, 농지환원 등 처리
 - 친환경축산 이행장부 기장, 항생제 사용 금지, 환경·방역교육이수 등
 - 친환경축산직불제 우수농가 사례집 발간·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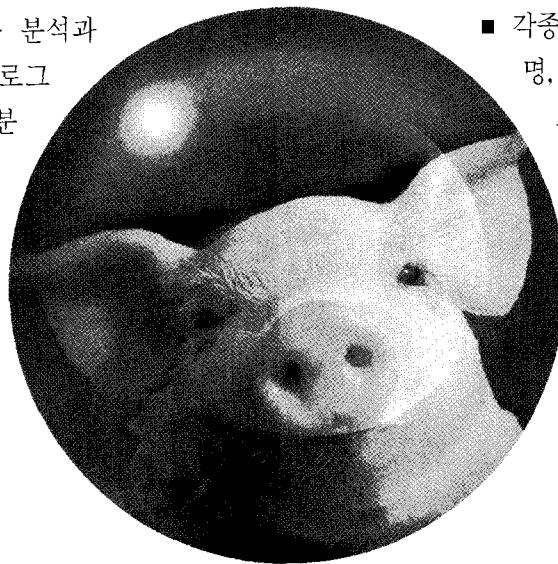
배부('05. 1 배부)

- 시범사업 분석·평가(연구용역 수행 중)를 통해 지원단가 및 이행요건 등 친환경축산 직불제 개선 방안 마련('05. 3)
 - 시범사업 프로그램의 준수요건과 직접지불 지원금에 대한 적정성 평가
 - 시범사업에 대한 축산농가의 적절성, 만족도 등 조사 분석과 직접지불제 정책프로그램의 경제적 효과 분석 및 총괄 평가
- 전문지·관련기관 단체 등을 통한 홍보 및 시·도별 합동교육 실시

7. 양돈업등록제 추진

(1) 현황 및 문제점

- 가축방역, 친환경 축산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력추적시스템 등 선진제도 도입을 위해 축산법을 개정('02. 12. 26)하여 일정 규모이상 농가는 '05. 12월까지 시·군에 등록하도록 의무화
 - 농가 위치, 사료·분뇨·약품 차량의 출입 경로 등을 사전 파악, 가축질병의 예방과 문제발생시 신속 차단 및 추적조사 가능
 - ※ 구제역 등 악성가축 질병 발생후 생산자단체에서 등록제 도입 요구
- 그동안 지역 순회설명회 개최, 리후렛 배포(22만부) 등 적극적 홍보 실시로 '04년도 말 10.7천호가 등록하는 등 큰 무리없이 진행중
 - 등록대상 농가 39.8천호의 27%가 등록



(2) 세부추진계획

- ◆ 동 제도의 도입 취지와 내용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행정기관 및 생산자단체를 독려하여 '05년말까지 차질없이 등록을 완료

- 각종 교육시 등록제 집중 설명, 홍보 리후렛 배포 등 홍보 강화
 - 등록제의 필요성과 미등록시 불이익 조치 등 중점 홍보
 - 추가 시설 설치없이 있는 그대로 등록하면 됨을 설명
- 시·도별 목표관리제를 도입하고 우수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
 - 농림부, 시·도, 생산자단체별 등록제 추진반 구성·운영 중
 - 시·도별 목표관리 독려('04. 12월 전국 평균 등록율 : 27%)
 - 시·군 전산보조인력 지원 : 1,222백만원(축발기금)

8. 가축방역대책 추진

(1) 여건 및 추진 상황

- 2000년 이후 동북아 지역 국가와의 교역 증대로 구제역 등 경제적 피해가 큰 악성 가축 질병 유입
 - 최근 주요 질병이 연중 번갈아 발생하는 양상을 보임

정 책

- 구제역 등 주요 가축 질병에 대한 사전 예방적 방역 대책 추진
 - 구제역 위험시기인 3~5월 중 특별방역대책 추진
 - 혈청검사·질병 예찰 등으로 구제역 청정상태 유지
 - 소독요령·예찰요령을 보완하여 일선의 효과적 예방대책 수행 지원
- 사전예방적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부처와 협조하여 가축방역종합대책 수립('04. 8. 25 발표)
 - 방역관련 제도개선, 방역조직 및 인력확충, 질병별 방역요령 등

(2) 세부추진계획

- ◆ 관련 법령 및 규정 정비와 각종 제도개선 사항을 코드화

 - 시·도·관련 단체·협회 등과 공조하여 후속 조치 추진

■ 제도 개선 사항

- ① 가축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시설 및 제도 개선
 - 밀집사육 지역 농가 이전 유도, '05년~'07년간 6개소 시범 추진
- ② 국경검역 강화로 악성 가축질병 유입 방지
 - 질병 발생국 여행자 중점관리, 탐지견 운영확대 등으로 휴대육류 검색확대('04년 18천건→'05년 19천건), 정부기관 공조 강화
- ③ 국내 차단방역 철저로 주요 질병 예방 및 사전 대비 강화
 - 전염병 조기 색출을 위한 상시 예찰체계 구축 및 실태점검(계속)

- 농장고용 외국인 방역관리, 소독방법 등 농가교육 실시(분기별 1회)
- ④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 책임과 능동적인 역할 강화
 - 방역 추진실적 등을 평가, 축산정책자금 등 차등화
 - 질병 비발생지역의 등급제 적용[1단계 종계장·종돈장 규정 마련('05. 상반기)]
- ⑤ 발생시 초동방역 및 조기 근절 방안
 - 질병별 SOP에 의한 정례적인 CPX실시(매년 3~5월)
- ⑥ 종식 및 발생지역 사후관리(계속)
 - 살처분 매몰지 사후관리 강화, 발생지역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
- 기타 주요질병 대책
- ① 구제역 재발방지 대책(계속)
 - 3~5월간 국경검역 강화, 농장 일제소독 등 특별방역대책 추진
- ② 돼지콜레라 발생 최소화를 위해 예방접종 100% 실시
 - 면역 형성을 95% 이상 유지(80% 이하시·군은 전문지에 공표)
- 방역조직 및 인력 확충
- ① 중앙조직은 우리부 조직진단 결과('05.1월)에 따라 보강방안 검토
 - ※ 방역관리본부 또는 방역청 설립 필요성 제기
- ② 지자체 방역조직 및 인력 확충계획 수립·시행(시·도, 시·군·구)
 - '04. 11월말까지 확충계획 수립 제출, '05. 3월말까지 채용 완료
 - ※ 당초 증원계획(행자부와 합의) : 232명, 자체 확충계획 집계결과 : 288명
- ③ 공익수의사제 도입 추진
 - '05. 3월까지 관련법 제·개정(의원입법), '06년 2월 현장 배치 양동